2019년도 제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Ⅰ. 회의 개요

o 일　　자 : 2019. 2. 1.(금요일)

o 장　　소 :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o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 박성호, 임진모, 전응준(분과위원장) 위원

o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및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3.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Ⅱ.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o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및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57건(안건번호 제2019-186호~342호)

- 회의결과: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그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기로 의결하되, 심의일 현재 삭제된 불법복제물등에 대하여는 그 복제·전송자에 대하여 경고의 시정만을 권고하기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o 전응준 분과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안건상정

o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및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 금일 심의 대상 안건은 안건번호 제2019-186호~342호로 모두 157건임. 먼저 안건번호 제2019-186호~207호까지는 네이버밴드에 게시된 소설 텍스트파일에 대한 것이며, 특히 이 중 안건번호 제2019-189~190호의 경우 심의 대상 게시물은 해당 저작물 전체 회차 중 약 1/6과 약 2/3 분량에 해당되지만, 위 게시물은 현재 유료로 판매되고 있는 회차들을 포함하고 있어 저작물 전체 회차를 게시한 경우와 달리 볼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임. 또한 안건번호 제2019-190호(순번 5번)와 안건번호 제2019-193호(순번 8번)의 경우 게시자가 불법복제물과 함께 간단한 감상평 등을 게시하고 있으나, 해당 불법복제물이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불법복제물만 제공한 경우와 달리 볼 이유가 없을 것임. 다음으로 안건번호 제2019-208호~214호의 경우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일본 만화를 무단으로 번역하여 올린 게시물이고, 그 밖에 나머지 안건들은 단순 불법복제물의 복제·전송에 해당하는 게시물임. 다만, 심의일 현재 게시물이 삭제된 일부 안건들의 경우에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고함

- 전응준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C 위원 : 게시자의 감상평 등을 함께 게시한 게시물과 관련하여 해당 게시물에 대하여 시정권고 집행 시 첨부파일만 삭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향후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현재는 게시물 단위로 시정권고를 집행하고 있음

- B 위원 : 게시자의 감상평 등을 함께 게시한 게시물들을 보면 감상평보다는 줄거리 요약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임. 또한 저작물의 일부를 올린 게시물들과 관련하여, 검토보고서에 각주로 설명한 다른 분과위원회에서 가결한 사례인 전체 수필집의 약 1/8 분량에 불과하더라도 수록된 수필 중 한편 전부를 게재한 것으로 보이는 게시물에 대하여 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한 사례와 금번 심의대상인 저작물의 일부를 올린 게시물들과는 사안이 다르다고 판단됨

- 성원영 전문위원 : 금번 심의대상인 게시물들은 저작물의 일부이지만 최소 120회차 이상을 게시한 것으로 각 회차별로 합법 저작물시장에서 유료로 판매되고 있음

- B 위원 : 검토보고서의 표현이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있지만, 각 회차의 전체가 올라가 있고, 각 회차별로 유료로 판매되고 있다면 시

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 A 위원 : 네이버밴드에서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되고 있는데, 향후 저작권 문제가 더욱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 성원영 전문위원 : 삭제된 게시물 중에서 게시자가 직접 삭제한 경우 이외에 첨부파일의 유효기간이 지나서 첨부파일만 자동 삭제된 경우에도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견을 구함

- C 위원 : 게시물이 없으면 게시물에 대한 삭제의 시정권고를 하여도 집행 대상이 없어서 집행 불능이므로,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성원영 전문위원 : 심의안건 중 우리말로 무단 번역한 일본 만화 게시물들은 모두 제목에 '번역'이라고 적혀 있으며, "내가 식질한 분량만 있음", "다시 수정해서 올림", "식자" 등의 표현에 비추어 볼 때 게시자가 직접 우리말로 번역하였을 가능성이 큼. 게시자가 직접 번역을 하였다는 점에서 2차적저작물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 화의 전체분량을 올린 점, 해당 저작물은 일본에서 최근 발표된 것으로 가까운 장래에 국내에서 정식 판매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정이용이나 인용에 해당될 여지는 거의 없으며, 오히려 불법복제물 게시를 통하여 해당 저작물의 잠재적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심의일 현재 게시물이 삭제된 경우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전응준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해당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

에게 의견을 구함

- A 위원 : 해당 만화들이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잠재적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필요한 지에 대하여 의문임

- B 위원 : 해당 저작물들이 일본에서는 정식 출판물로 발행되고 있는 점, 해당 저작물들이 모두 2018년도 이후 발행된 최신 저작물이라는 점, 흥행 시 국내에서도 정식 발행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 이러한 불법복제물들이 실시간으로 계속 유통될 경우 발행의 의지 자체가 꺾일 우려도 존재하여 잠재적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 성원영 전문위원 : 앞서 설명한 안건들 이외의 심의안건 게시물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단순히 저작물을 그대로 불법 복제한 것들임

- 전응준 분과위원장 : 심의 안건 중 유료 소설 전부 또는 일부를 텍스트파일 형태로 밴드에 게재한 것은 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삭제전송중단 및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고, 커뮤니티 사이트 내 일본 만화의 우리말 번역 게시물들도 이러한 불법복제 게시물이 잠재적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삭제전송중단 및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심의일 현재 삭제된 게시물들에 대한 심의안건들은 게시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함.

(경고, 삭제 및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심의안건 게시물들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하며, 심의일 현재 삭제된 게시물들에 대하여는 게시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하기로 의결함”

3. 폐회 선언

o 전응준 위원장이 제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19년 제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2. 14.

분과위원장 전응준

위원 박성호

위원 임진모